

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심사보고서

내무위원회
1994. 9. 9.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· 제출일자 : 1994년 8월 30일

· 회부일자 : 1994년 8월 30일

다. 상정일자 : 제 105 회 임시회

· 제 1 차 내무위원회 (1994. 9. 9.)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한철환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를 널리 발굴 시상하여 충북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도록하고 또한,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, 개선 운영함으로써 문화상의 위상을 높이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수상대상 자격을 “충청북도내에 당해년도 9월 1일 현재 5년이상 거주하는 자(과거 5년이상 거주하던 자가 9월 1일 현재 2년이상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)와 타시도 거주자로서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” 로 하고
- 한번 문화상을 받은 자는 “그 수상부문은 물론 다른 부문의 문화상도, 다시 받을 수 없다” 로 함.

(수상부문 : 조례 제3조제3,5호)

- “예술부문” 을 “문화예술부문” 으로, “새마을운동부문” 을 “지역개발부문” 으로 명칭 변경

(간사와 서기 : 조례 제7조제2항)

- “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계장이 된다” 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

(전문위원 우 병 수)

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,
현행 문화상 조례에 의해 수상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충청북도 내에 당해년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5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추천 수상하여 왔으나 이는 공적심사 및 추천시기 등에 있어 시상시기와 불부합한 바,

이에 대해 선정기준을 9월 1일로 하고 도내에서 5년이상 거주한자로 하되 타시도 거주자인 경우에도 도내의 직장에서 5년이상을 근무한 자는 수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또한 수상부문에 있어서도 종전 예술부문과 새마을운동부문을 문화예술부문과 지역개발부문으로 현실과 부합되는 명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

한 번 문화상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동부문은 물론 타부문의 문화상도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 편향주의적인 수상을 방지코자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문화상 조례의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 개선하여 문화상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충북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참여와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개정조례안은 승인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5. 토 론 요 지 : 해당사항 없음

6. 수정안요지 : 충청북도 문화상조례 제3조 수상부문에 7호로 “교육
부문” 추가

7. 심 사 결 과 : 수정동의안 6인중 6인 찬성으로 충청북도 문화상 조례
제3조 수상부문에 “교육부문”을 추가신설하고 도원안
대로 의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해당사항 없음

9. 기타필요한 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. 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- . 신규 조문 대비표
- . 충청북도 문화상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